

내부거래위원회 규정

BGF리테일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주식회사 비지에프리에틸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내부거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「정관」 또는 「이사회규정」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권한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거래금액이 회사의 자본총계(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본총계를 말한다)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의 거래에 대하여 심사 및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.

1. 「회사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공정거래법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이를 위하여 자금·유가증권·자산·상품·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(이하 “내부거래”라 한다)

2. 회사가 제1호 소정의 내부거래의 주요내용(거래의 목적 및 대상, 거래의 상대방, 거래의 금액 및 조건,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등)을 변경하는 행위

② 위원회는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사전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.

1.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이용에 해당하여 이사회에 승인이 필요한 거래

2.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에 승인이 필요한 거래

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이나 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사 및 승인할 수 있다.

제2장 구성

제4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에 결의로

한다.

-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사외이사의 수를 위원총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와 동일하며, 임기 만료 기타의 사유로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도 자동적으로 상실된다.

제5조(위원장) ①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참석자 중 선임 위원, 연장자의 순으로 그 절차를 주재하기로 한다.

제3장 회의

제6조(소집권자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 최초 소집은 이사회 의장이 한다.

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(소집절차) ① 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12시간 전에 각 위원에게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8조(결의방법)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,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9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10조(통지의무 및 이사회 소집) ①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2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통지 받은 각 이사는 위원회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, 이사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제11조(의사록)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4장 보칙

제12조(간사) ①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사전준비를 총괄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회사 업무분장에 따라 내부거래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행한다.

제13조(규정의 개폐)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 다만 법령의 개정에 의한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용어변경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없이 변경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0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.